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 추가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79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추가	3
2. 개정안 부칙	8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학영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8.

3. 회부연월일 : 2026. 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 교원이 유아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유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는 취약한 대상으로서, 아동학대 행위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고 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차단하고 유아의 안전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호다목).

Ⅲ. 검토의견

1.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 ----- -----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생 략)	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3.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유치원의 교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이 유치원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유아가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유치원 등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¹⁾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중복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결격사유 기간의 상한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결격사유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에 해당되면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을 영구히 제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취지²⁾를 고려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결격사유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정범죄전력자 결격사유 관련 헌재 결정 사례³⁾]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자)	위헌·불합치 내용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 호가목 등	2013헌마575등 (2015.12.23.)	마약류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20년간 택시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헌법불합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2013헌마585등 (2016.3.31.) 외 2건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교육기관등에 취업을 제한(위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2013헌마585등 (2016.3.31.) 외 4건	성인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을 제한(위헌)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2015헌마915 (2016.7.28.)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위헌)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제17호	2017헌마130등 (2018.6.28.)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위헌)

2) 헌법재판소는 법률상 결격사유에서 특정범죄전력자를 장기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에 대해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오고 있으며, 결격기간과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한 20년간의 일률적 취업제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한 10년간의 일률적 취업제한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3) 국회사무처, 헌법과 법제(일률적 취업제한의 위헌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2022. 12. 1. 참고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8호 등	2019헌마813 (2022.9.29.)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위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나목	2020헌마1181 (2022.11.2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 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범죄로 형 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일반직 공무원(또는 부서관) 임용을 영구 적으로 제한(헌법불합치)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 호의4나목		

셋째, 결격사유를 개정취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결격사유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행위 전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에는 알선기관 외 알선,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 등 아동학대와 관련이 없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바, 개정취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⁴⁾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범위에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행위⁵⁾는 제외하고 있음.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5)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넷째,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제22조의2제2호의 법문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법문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의견

1) 교육부 (신중검토)

- ☐ 법률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초·중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 전체 교원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시·도교육청 (신중검토)

- ☐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우 범위가 포괄적이고 신고 문턱이 낮다는 점에서 유치원 학부모로부터의 무고성 신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 「아동복지법」에 이미 벌금, 징역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존재하므로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 및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 부칙은 「유아교육법(법률 제17661호, 2020. 12. 22.)」 개정시의 부칙⁶⁾과 유사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7

6) 「유아교육법」(법률 제17661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구분	입법례
<u>아동학대 범죄 한정</u>	「교육공무원법」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u>「아동복지 법」 제17조 위반행위 전체</u>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